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5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 증대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을 개선하고자 하며,
-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변경
- 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전자결제 시스템(신용카드) 도입
- 다. 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을 적용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5. ~ 11. 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로 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banking,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2]와 같이 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다음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①~②(생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뱅킹,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신설>	④ 군수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2]와 같이 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	제7조(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
②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② ----- -----별표3----- -----

현행				개정안			
【별표1】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별표1】비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원)				(단위:원)			
구분		사용시간	요금		비고		
명칭	크기		주중	주말, 성수기			
숙박의정	· 통나무집 (구건물)	1동/1일	50,000 (군민40,000)	70,000 (군민60,000)	※ 주중: 월~목 ※ 주말: 금·토·일, 공휴일 전일 및 당일 ※ 성수기: 7 ~ 8월 ※ 사용시간: 15:00 ~ 다음날 12:00(오전) ※ 열성군민 사용료 일부감면		
	· 통나무집 (신건물)		60,000 (군민50,000)	90,000 (군민70,000)			
	· 통나무집 (신건물)		120,000 (군민110,000)	180,000 (군민160,000)			
산림문화휴양관	· 콘도	1동/1일	60,000 (군민50,000)	90,000 (군민70,000)	※ 성수기 및 주말이라 함은 7.1일 ~ 8.31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관 (신건물)		110,000 (군민100,000)	160,000 (군민140,000)			
	· 청소년수련관 (신건물)		50,000 (군민40,000)	70,000 (군민60,000)			
야영장	· 데크	1조/1박	10,000	5,000	※ 운영기간: 7.1 ~ 8. 31		
	· 바닥						
세미나실	· 2층(196㎡/120인용)	1회	150,000	200,000	※ 사용요금은 1회 4시간 기준임 (추가사용의 경우: 1시간당 20,000추가-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객실 3개이상 예약시 사용료 20% 감면		
기타	· 야외공연장	1회	20,000				

현행				개정안			
【별표1】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별표1】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표(제6조 관련)			
구분		사용 시간	요금		비고		
명칭	크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산림문화 휴양관	5인용(29㎡)	1동/1 일	60,000 (군민50,000)	90,000 (군민70,000)	※ 성수기 및 주말이라 함은 7.1일 ~ 8.31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19인용(101㎡) (신건물)		170,000 (군민130,000)	240,000 (군민190,000)			
숲속의 집	9인용(50㎡)	100,000 (군민80,000)	140,000 (군민120,000)				
	12인용(68㎡)	130,000 (군민110,000)	180,000 (군민160,000)				
야영장	·데크	1조/1 박	10,000		※ 운영기간 : 7.1 ~ 8. 31		
	·바닥		5,000				

현행		개정안	
[별표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별표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구분	반환기준	구분	반환기준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80% 환불
2.관리기관의 귀책사유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 사용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50% 환불	2.관리기관의 귀책사유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 사용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50% 환불
	○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속하여 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후 환불		○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속하여 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배상
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3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30%배상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 생활밀착형(자연휴양림 다자녀 감면) 제도개선(안) 의견조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에 따라 부패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안을 소관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2018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목표로 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이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작지만 지속적으로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법·제도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이를 위해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단체·협회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 [붙임1]과 같이 귀 기관의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다자녀 감면)’를 알려 드리오니, 위 과제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붙임2]의 서식에 따라 '18.9.14.(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제도개선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6. 참고로, 향후 귀 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권고되는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조치기한은 사안에 따라 6개월~1년 이내로 설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붙임 1. 기관별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지방자치단체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에 다자녀 가구 감면제 도입) 1부.
2. 제도개선 과제 소관기관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신자 강원도지사(산림관리과장), 강릉시장(산림과장), 양구군수(생태산림과장), 영월군수(환경산림과장), 인
군수(산림자원과장), 정선군수(환경산림과장),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산림과장), 태백시장(농정산림
장), 홍천군수(산림과장), 경기도지사(산림과장), 양평군수(산림과장), 연천군수(산림복지과장), 용인시
(산림과장), 경기도 의왕시 환경사업소(공원산림과장), 포천시(산림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산림
과장), 산청군수(한방향노화실장), 창녕군수(주택산림과장), 함양군수(산림복지과장), 합천군수(산림
장), 경상북도지사(산림산업과장), 경주시(산림경영과장), 구미시 선산출장소장(산림과장), 군위군수(경
산림과장), 문경시장(산림복지과장), 상주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성주군수(산림과장), 안동시
(산림과장), 영양군수(산림축산과장), 영천시(산림복지과장), 울진군수(산림복지과장), 의성군수(산림
장), 청송군수(환경산림과장), 칠곡군수(농림정책과장), 포항시장(산림과장), 달성군수(공원복지과장),
전광역시장(공원복지과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전라남도산림자원연
소장, 강진군수(해양산림과장), 고흥군수(환경산림과장), 광양시장(휴양림사업소장), 구례군수(구례군
원관리사업소장), 보성군수(산림산업과장), 신안군수(공원복지과장), 여수시장(산림과장), 장흥군수(한
산림과장), 해남군수(산림복지과장), 화순군수(산림산업과장), 전라북도지사(산림복지과장), 남원시장(림
과장), 무주군수(환경산림과장), 시설공원사업소장, 임실군수(축산산림과장), 장수군수(산림복지과장),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공주시(산림과장), 금산군수(산림정책과장), 논산시(산림공원과장), 보
시장(산림공원과장), 부여군수(산림복지과장), 아산시(산림과장), 예산군관광시설사업소장, 천안시
(산림휴양과장),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단양군수(산림복지과장), 다누리
터관리사업소장, 보은군수(산림복지과장), 영동군수(산림과장), 옥천군수(산림복지과장), 제천시(산
공원과장), 증평군수(증평군휴양공원사업소장), 진천군수(산림축산과장), 청주시(산림과장), 충주시
(산림복지과장)

정사무관

경제제도개선 전결 2018. 9. 7.
과장

조자

행 경제제도개선과-2313 (2018. 9. 7.) 접수 공원복지과-6035 (2018. 9. 7.)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 www.acrc.go.kr

화번호 044-200-7236 팩스번호 044-200-7922 / jang503@korea.kr / 비공개(5)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 권고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2018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목표로 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이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작지만 지속적으로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법·제도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을 마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붙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2018. 5. 28.(월)까지 붙임2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 결과는 붙임3의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결서

2.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3. 제도개선 추진계획.

4. (참고) 지자체 휴양림. 끝.

국민권익위원회

·신자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리부서 및 감사부서

정사무관	경제제도개선 과장	권익개선정책 전결 2018. 4. 30. 국장
조자		
행 경제제도개선과-1220	(2018. 4. 30.)	접수 공원녹지과-1319 (2018. 4. 30.)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국민권익 위원회)	/ www.acrc.go.kr
화번호 044-200-7235	팩스번호 044-200-7922	/ dodochu@korea.kr / 대국민 공개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